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60호 2022. 4. 1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예천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35호)

공 고

-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618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737-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[수도공급설비(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)]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29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의제)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14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위치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737-2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사업의 종류 :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사업
 - 사업의 명칭 :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(송수가압장 설치)
3. 사업의 규모
 - 사업면적(군계획시설) : 2,242.9㎡
 - 건축계획 : 건축면적 168.7㎡, 건축연면적 195.03㎡(1개동, 지하1층~지상1층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예천군수
 - 주 소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5. 사업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~ 2023. 12. 31.
6. 건축허가(신고)일 : 2022. 4. 7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
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

일련 번호	소 재 지				지목	면적(㎡)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비고
	읍면	리	당초 지번	편입 지번		공부상	편입	주 소	성 명	종 류	성 명	
1	예천	고평	737-2		답	2,242.9	2,242.9	예천읍 호자로 **	김*기			

8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(☎054-650-6345)로 문의하시
기 바랍니다.

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14일

예 천 군 수

1. 규 칙 명 :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인수위원회 구성,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4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
- 위원장은 당선인 보좌, 위원회 업무 총괄, 직원 지휘·감독
-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

다. 직원, 예산·활동지원,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-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필요시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
-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, 차량 등 지원
- 참석 위원, 직원, 자문위원에게 수당, 여비 등 지급

라. 위원회 활동 백서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bk2864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기획감사실

3) 팩스 : 054-650-60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(전화 : 054-650-681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서 위임한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직원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)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